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3년 10월 30일(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11월 5일(제1차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충·남북, 대전 등 3개시·도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동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동 조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 조례 폐지 공포일 이전에 발생된 결산 잉여금의 처리와 3개시·도의 협약사항에 관한 그 효력의 존속여부, 향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의 시·군별 배분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2059호, 1993.5.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6 생략

7.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14 생략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⑩ (생략)